

3.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보건의료정책과장: 최현정 ☎ 2133-7505

의약무팀장: 문선희 ☎ 7531 담 당: 김효은 ☎ 7532

마약대응팀장: 유희정 ☎ 7530 담 당: 박아영 ☎ 7518

건강관리과장: 정소진 ☎ 2133-9465

건강임신지원팀장: 이미점 ☎ 9490 담 당: 이지민 ☎ 9493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맞춤형 화장품 판매 규제 완화 건의 (보건의료정책과, '25.3.28.)	☐ 현황 ○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(리필) 판매 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의무 고용 ○ 화장품 소분 판매 시 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안전·위생 등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 (의안번호 제6165)이 국회 계류 중 ※ 상반기 진행된 규제철폐 시민제안 수용 ☐ 문제점 ○ 현재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에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식적 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☐ 건의내용 ○ 현재 발의된 법률개정안 내용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는 종업원의 교육 의무 제외 ○ 현 법률개정안 통과 시 종업원 교육 방법 간소화 ☐ 관련 규정 ○ 「화장품법」 제3조의2	식품의약품안전처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2.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제도 개선 건의 (보건의료정책과, '25.4.29.)	☐ 현 황 ○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이 마약류 범죄 확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, 영리목적의 과다처방 또는 셀프처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☐ 문제점 ○ 환자의 마약류 쇼핑 지속과 의료기관의 경각심 부족 등으로 마약류 오남용 발생 지속 ☐ 건의내용 ○ 오남용 의심 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-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의무 마약류 품목 대폭 확대(프로포폴 등) - 오남용 우려 환자 정보 의료기관 제공 법적 근거 마련 ○ 자가 처방 제한 마약류 품목 확대 - 마약류 오남용 주요 품목에 대하여는 의료인 자가 처방을 금지하도록 품목 확대 ☐ 관련 규정 ○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○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	식품의약품안전처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3.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보호 제도 개선 건의 (보건의료정책과, '25.4.29.)	☐ 현 황 ○ 10대 마약류 사범수가 최근 5년간 6배 이상 증가 ('23년 기준 전체 사범의 5.3%) ○ 청소년기는 아직 뇌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로 마약에 더욱 취약하여, 중독 초기 개입 및 치료재활이 매우 중요함 ☐ 문제점 ○ 청소년 마약 사범의 경우, 검거 초기부터 상담, 치료·재활로 연계하여야 하나 의무 법령이 부재하여 권고에 그침 ☐ 건의내용 ○ 청소년 마약류 투약자의 상담, 치료·재활을 의무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- 청소년 중독자 적기 치료 근거 확보 ☐ 관련 규정 ○ 청소년 보호법 제3조	여성가족부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4. 가임력검사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 건의 (건강관리과, '25. 5. 2.)	□ 현 황 ○ 정부(보건복지부)에서 '24년도부터 저출산 대응 정책사업으로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(가임력검사) 추진 중 - (대상)가임기 남녀, (지원횟수)생애 3회 - 1회당 검사비(비급여) · 여성 13만원(난소기능검사, 부인과초음파 등) · 남성 5만원(정액검사 등) □ 문제점 ○ 복잡한 사업체계로 인한 서비스 이용자 민원 및 사업부서 업무 과중 - 처리절차: 신청절차 5단계(보건소 사전신청 → 보건소 승인 → 검사 → 신청인이 보건소로 영수증 첨부, 검사비 청구 → 검토 후 지급) ○ 의료기관 과잉검진 권유로 민원발생 - 가임력 필수검사 외 기타 추가검사 권유로 추가비용 수납요구 □ 건의내용 ○ 국가건강검진 선택항목에 가임력검사 항목을 포함시켜 건강검진 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□ 관련 규정 ○ 건강검진 실시기준(보건복지부 고시) 제5조(검사항목) - 가임력 검사(난소기능검사, 부인과초음파, 정액검사 등) 포함	보건복지부